##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87 발의연월일: 2024. 12. 26.

발 의 자:이양수・박덕흠・정희용

김소희 • 이인선 • 김승수

이종욱 • 김선교 • 박충권

권영진 • 배준영 • 이종배

의원(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및 벌칙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건으로 산림복지 전문업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한 경우를 추가하되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는 경우에는 취소대상에서 제외하고, 산림복지전문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산림복지지구 지정 시에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함께 수

립하도록 하는 등 산림복지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국산 림복지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부금품 접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 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근거 마련 (안 제10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 도하거나 대여하지 않도록 함.
- 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행정처분 요건 개선(안 제11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일시적으로 인력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 다.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등록 취소 등 근거 마련(안 제22조)
  -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사유에 산림복 지전문업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 업을 신고한 경우 등을 추가하되,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에 미달되

는 경우에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 라.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 · 폐업 등 신고제도 도입(안 제22조의3)
  -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업체 사정 등으로 인해 3개월 이 상 휴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신 고를 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휴업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휴업기간 종류 후 1년이 지나도 재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고,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한 자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휴업을 신고한 기간 동안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할수 없으며,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도록 함.

## 마.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안 제27조ㆍ제29조ㆍ제33조)

-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해 산림복지지구 지정, 산림복지단지 조성 계획 승인,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에 걸쳐 인·허 가를 받도록 한 사항을 산림복지지구 지정 시 산림복지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승인받도록 하여 조성 절차를 2단계로 간소화함.
-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변경 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역주민 의견

청취 없이도 지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바.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인ㆍ허가 의제 추가(안 제37조)
  - 현행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은 의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해제 또는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는 의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도 의 제할 수 있도록 함.
- 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부금품 접수조항 시설(안 제55조의2)
  - 진흥원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
  -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함.
- 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청문 제외대상 규정(안 제59조)
  - 스스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를 요 청하거나 폐업 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된 경우에는 청문 대상 에서 제외함.
- 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벌칙 추가(안 제64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차.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과태료 추가(안 제66조)
  -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신고 기간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률 제 호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을 "산림복지단지"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는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양 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경우"를 "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인력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로 한다.

- 3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8.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제22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 적으로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5.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부가 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 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3(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산림복지전문 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 야 한다.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 1.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 2.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 3.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 4. 폐업하려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휴업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폐업 등을 신고한 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서비스제 공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을 신고한 기간 동안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산림복지전문업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27조제1항 중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4항제1호 중 "위치·면적"을 "명칭·위치·면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또는 지정 변경일
  - 4. 제33조에서 규정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그 밖에 산림복지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3년 이내에 해당 산림복지지구에 제33조제1항에"를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에"로, "조성계획"을 "실시계획"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성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로, "포함되어야"를 "포함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종전의 제5항) 중 "수립·승인"을 "수립"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0호 중 "제3항까지"를 "제3항까지 및 제19조"로, "지정"을 "지정 및 지정해제"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 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호 중 "취소"를 "취소(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취소"를 "취소(제2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6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4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제6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을 신고한 기간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복지지구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의 제27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지지구에 대해서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		
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え) ①		
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			
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u>	4. <u>산림복지단지</u>		
실시계획의 승인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제1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① ~ ③ (생 략)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		
	록한 자는 다른 자에게 등록증		
	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		
	<u>니 된다.</u>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① 산림청장은 제10	등록 취소) ①		
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복			
지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		

또는 제4호의2(제22조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단서 신설>

<신 설>

4. ~ 7. (생 략) <u><신 설></u>

② <u>제1항에 따라</u> 산림복지서비 스제공자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 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 다.

1. • 2. (현행과 같음)
3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인력
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4. ~ 7. (현행과 같음)
8.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
록한 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
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
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
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또
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
록을 말소한 경우
② <u>제1항제1호부터</u>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

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 ③ (생략)

제22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 문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한다.

1. • 2. (생략)

<신 설>

3.·4. (생략) <신설>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
소) ①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
만,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에 미
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3. • 4. (현행과 같음)

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 장에게 폐업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신 설>

② (생 략)<신 설>

-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 유로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 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제22조의3(산림복지전문업의 휴 업·폐업 등의 신고) ① 산림복 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 1.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 2.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경우
  - 3.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4. 폐업하려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휴업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 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등의 여 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산림복지지 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u>협의하여</u> 야 한다. <단서 신설>

나도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 업의 휴업 · 폐업 등을 신고한 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 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경우에 는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을 신 고한 기간 동안에는 산림복지서 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할 수 없 으며, 산림복지전문업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 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 고려하여 -----

-----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

- ③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해당 지 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서 신설>
- ④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 다.
- 1. 산림복지지구의 위치 · 면적
- 2. (생 략)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 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 제29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

<u>다만, 대통령령으로 정</u>
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 <u>명칭·위치·</u>
<u>면적</u>

- 2. (현행과 같음)
-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또는 지정 변경일
- 4. 제33조에서 규정한 산림복지 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그 밖에 산림복지지구의 지 정 •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라 지정된 산림복지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산림복지지구 지정 · 고시일 지지구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승 인 신청이 없는 경우
- 2. (생략)
- ② (생략)
- 수립) ① 사업시행자가 산림복 지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타당 성조사 결과를 첨부한 산림복지 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 ① 산림청장은 제27조에 따 제) ① -----1. -----부터 <u>3년 이내에 해당 산림복</u> -- <u>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u>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 항에 ----- 실시계획----
  - 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삭 제>

①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 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된 산림복지단지 조 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여야 ---.

- 1. ~ 6. (생 략)
- ③ 산림청장은 조성계획을 승인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추진 현황 및 지연 사유 등을 조사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 ⑤ 그 밖에 조성계획의 <u>수립·</u> <u>승인</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협의·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u>②</u> <u>午</u> 冒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
가등의 의제) ①

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 29. (생략)
- 3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 항까지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3항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 ② ~ ④ (생 략) <신 설>

1. ~ 29. (현행과 같음)	
30	
	<u>제3항</u>
까지 및 제19조	
지정 및 지정해제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5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 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 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 한 기부금품을 별도계정으로 관 리하여야 한다.

제59조(	(청문) 선	<u></u> 사림청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ㅎ	나네	해당	하는	처
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	을 하	여
야 힌	다.				

-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 지서비스제공자 등록의 취소
- 2. 삭 제
-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 지전문업 등록의 취소
- 4. (생략)
- 5. 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 6. (생략)
- 제6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수료를 납 부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

     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 5. 6. (생략)

제59조(청문)
1
취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u>취소(제22조</u>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외한다)
4.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6. (현행과 같음)
제60조(수수료)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 6. (현행과 같음)

제64조(벌칙)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신 설>

2. ~ 6. (생략)

제66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2. (생략)

<신 설>

3. ~ 5. (생략)

③ (생 략)

제64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_\_\_\_\_

-----

---.

- 1. (현행과 같음)
-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 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 3. ~ <u>7</u>. (현행 제2호부터 제6호 까지와 같음)

제6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2 -----

-----.

- 1. · 2. (현행과 같음)
- 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을 신 고한 기간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영업을 한 자
- 4. ~ <u>6</u>. (현행 제3호부터 제5호 까지와 같음)
- ③ (현행과 같음)